

성남시의회 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의안 번호	793
----------	-----

99. 6. 4

1. 제안이유

- 본 조례의 개정은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착오로 잘못 사용된 용어를 바르게 정정하여 보상금 지급 업무가 정당하게 수행되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개정내용

- 본 조례4조 (보상금 지급기준)1항 1,2호의 지급 기준중 “시도의원”을 기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“시의원”으로 정정하고
- 본 조례 제8조 (보상금의 지급방법) 제1항의 “구좌”를 “계좌”로 개정하며
- 본 조례 제11조 제14조 제15조의 조명중 “심의위원회의 임기”를 “심의위원의 임기”로 하고, “심의회의 간사”를 “심의회 간사”로 또한 “심의회의 수당등”을 “심의회 수당등”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

3. 검토의견

-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지급기준을 “시의원” 수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착오로 잘못 사용된 용어를 바르게 정정 사용토록 개정함은 타당하고 적절한 조치라 생각됩니다.